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 :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05월 04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(생략)	**보수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4. 투자실적 추이** (생략)	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**4. 투자실적 추이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 년 05 월 04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**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(추가)	**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10)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-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파워e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

2. 주요 변경내용 :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05월 04일

[변경등록신청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 년 05 월 04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**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(추가)	**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10)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-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

		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
	4.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(생략)	**4.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 :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05월 04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**2. 위험등급**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0.09%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**2. 위험등급**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0.05%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년 05월 04일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0.09%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0.05%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

	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코스닥벤처기업&공모주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 : 종류 W 신설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05월 0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W C9065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9. 종류 W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2항 <추가>	제2항 9. 종류 W 수익증권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W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6.5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0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

[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W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종류W C9065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W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종류W C9065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 년 05 월 04 일 - 종류 W 신설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<추가>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(2) 종류별 가입자격 <추가>	**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(2) 종류별 가입자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추가>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W 선취판매수수료, 후취판매수수료, 환매수수료 : 없음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추가>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[종류W]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0.650% 판매회사보수율 : 0.000% 신탁업자보수율 : 0.030%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0.015% 보수합계 : 0.695%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

<table>
<tr>
<td></td>
<td>예시표
<추가></td>
<td>예시표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
<tr><td>종류W</td><td>71</td><td>225</td><td>394</td><td>896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블루칩바스켓 증권투자신탁(V-1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 :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05월 04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(생략)	**보수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4. 투자실적 추이** (생략)	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**4. 투자실적 추이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 년 05 월 04 일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**1. 재무정보** (생략)	**1. 재무정보** 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Power Up 블루칩 증권자투자신탁(제1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05월 04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(생략)	**보수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**2. 위험등급**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]]이 11.93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- (생략)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.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**2. 위험등급**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2.61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- (생략, 현행과 동일) <삭제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년 05월 04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

		변경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1.93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- (생략)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2.61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- (생략, 현행과 동일) <삭제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	**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(추가)	**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8)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

사항		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-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